

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구합20637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등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담당변호사 이○○
피 고 ○○시장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담당변호사 박○○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○○
변 론 종 결 2025. 5. 8.
판 결 선 고 2025. 6. 1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

주위적으로, 피고가 2023. 4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예비적으로, 피고가 2017. 6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39,758,560원, 농어촌특별세 36,987,920원, 지방교육세 73,975,83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 등

1) ○○○도지사는 2006. 3. 16. 도시개발법에 따라 ○○시 B동, C동, D리 일원 556,160㎡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E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(○○○도 고시 F)하였다. 그에 따라 피고는 2007. 8. 30. 위 도시개발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고 한다)에 대하여 E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을 고시(○○시 고시 G)하였다.

2) E 도시개발사업조합(이하 '이 사건 조합'이라고 한다)은 2006. 7. 28. 조합설립 등기를 하였고,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.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H블럭 토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1,588세대를 분양한 회사이다.

3)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면,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는 초등학교 1개소, 중학교 1개소의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가 설치되도록 지정되었고, 이 사건 사업 환지계획에 따라 ○○시 I 학교용지 15,009.9㎡(이하 '이 사건 쟁점토지'라 한다)가 이 사건 사업의 초등학교 학교용지로, ○○시 J 학교용지 13,989.3㎡(이하 '이 사건 중학교용지'라고 한다)가 이 사건 사업의 중학교 학교용지로 각 지정되었다.

4) 피고는 2008. 11. 28. 이 사건 사업 환지계획 인가를 공고(○○시 공고 K)하였는데, '이 사건 쟁점토지 및 중학교용지를 보류지'로 지정하고, '소유권 취득자를 ○○



○도'로 지정하였다. 이후 피고는 2018. 5. 8.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지처분(이하 '이 사건 환지처분'이라고 한다)을 하고, 같은 날 이를 공고(○○시 공고 L)하였다.

5) 이 사건 조합은 2018. 7. 16.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중학교용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2019. 1. 24. 원고에게 2019. 1. 2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6) 원고는 2019. 3. 4. ○○○도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7. 6. 23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·납부

원고는 2017. 6. 21.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'취득일 2017. 5. 26.', '취득 원인: 매매'로, '취득가액: 18,493,964,012원'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97,758,560원, 농어촌특별세 36,987,920원, 지방교육세 73,975,850원(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'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을 신고하고, 2017. 7. 25. 이를 납부하였다.

다. 원고의 이 사건 중학교용지에 관한 취득세 등

한편, 원고는 2019. 1. 24. 이 사건 중학교용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1,076,834,100원을 신고·납부하였으나, 2022. 11. 7.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 및 이 사건 조합과 ○○○도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464(본소), 2021가합208417(반소) 판결(이하 '관련 판결'이라 한다)을 근거로 '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용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'을 이유로, 피고에게 이 사건 중학교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, 피고는 2023. 1. 25.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 합계 1,076,834,100원을 환급하였다.



- 이 사건 중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보류지 및 학교용지법에서 정한 학교용지에 해당한다.
- 학교용지를 공급받는 ○○○도는 이 사건 환지처분 다음날 이 사건 중학교용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.
- 따라서 ○○○도가 원시취득한 이 사건 중학교용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, 이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, 이 사건 조합은 ○○○도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, 원고는 ○○○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라.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

1) 원고는 2023. 3. 3. 피고에게 '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중학교용지 취득행위를 무효라고 본 것과 동일하게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행위 자체도 무효'라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(이하 '이 사건 경정청구'라 한다)를 하였다.

2) 피고는 2023. 4. 11.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거부통지'라 한다)

- 이 사건 중학교용지에 관한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쟁점토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, 관련 판결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.
-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7. 5. 26. 잔금을 지급하고 2017. 6. 21.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였고, 2017. 6. 23. ○○○도교육청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리고 2019. 1. 24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.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,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에 대해 관련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환급대상이 아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

2. 관계 법령

별지 '관계 법령' 기재와 같다.

3. 원고의 주장 요지

가. 주위적 청구

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에는 아래와 같은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1) '이 사건 환지처분에 의해 ○○○도가 이 사건 중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, 이에 터잡은 등기가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'라는 취지의 관련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학교용지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다. 이러한 관련 판결은 같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, 관련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행위 역시 무효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.

따라서 관련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사유가 존재한다.

2)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관련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경정사유가 존재한다.

나. 예비적 청구

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, 피고가 2017. 6. 21. 원고에게



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.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.

4.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

가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본안전 항변

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되고 난 뒤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.

2) 판단

가) 관련 법리

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,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(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).

나) 구체적인 판단

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.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,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① 지방세기본법은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'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



까지 제출한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'고 정하고 있고,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서는 '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(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)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'고 정하고 있다.

② 그런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. 7. 25.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. 3. 3. 제기되었다.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관련 판결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2. 9. 6.경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,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'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'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한다. 그러나 원고는 2022. 9. 6.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. 3. 3.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.

③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청구로 부적법하여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



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.

나. 소결

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.

5.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

가.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, 구 지방세기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. 1. 1.부터 시행된 것)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,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1. 1. 1.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) 제72조 제1항이 삭제됨으로써 2011. 1. 1. 이후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게 되었다.

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하고 있고(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제1호),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'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·납부방법, 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.'고 규정하고 있는 등 불복방법에 대하여도 본세에 의지하는 종속적인 성격의 세금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신고·납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.

나. 가정적 판단



1)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 사건 거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,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.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,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 한편,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장·증명의 책임이 있다(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).

3) 그런데 앞서 든 증거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2017. 5. 26.자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, 2017. 7. 25.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.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당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·납부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7-14

6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 판사 김○○

 판사 손○○



별지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기본법(2023. 3. 14.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·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,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

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.

1. 취득세: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

제35조(납세의무의 확정)

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.

1.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: 신고하는 때. 다만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.

제50조(경정 등의 청구)

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[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(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]를 말한다]에 최초 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)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1.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

2.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
-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 1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(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 2.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
 3.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. 끝.